

1. 개정이유

최근 액화석유가스 가격상승으로 인한 서민·영세자영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액화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2026년 12월 31일
까지 부과하지 아니함(안 제8조제2항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재정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호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
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·판매부과금의 징수, 징수유예 및 환급에
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부탄

가. 2026년 12월 31일까지 : 면제

나. 2027년 1월 1일 이후 : 1톤당 62,283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부과금의 부과기준)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8조(부과금의 부과기준) ① --- ----- ----- ---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석유제품 판매시 징수하는 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.
1. 삭 제	1. 삭 제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부탄 : 1톤당 62,283원</u>	3. <u>부탄</u> <u>가. 2026년 12월 31일까지 : 면제</u> <u>나. 2027년 1월 1일 이후 : 1톤당</u> <u>62,283원</u>
4. 삭 제	4. 삭 제